경상북도 공고 제2019 - 1347호

# 2019년 하반기 경상북도 소방공무원(항공조종사)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 하반기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항공조종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 Ⅰ. 시험개요

###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제9조(시험실시기관)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34조(시험실시권)

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 2. 채용예정인원 : 총 3명

| 채용기관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비고 |
|---|---|---|---|---|
| **경북소방본부** | **소방항공조종사** | **지방소방위** | **3명** | **남** |

### 3. 채용일정

| 시험명 | 시 험 일 정 | | | | |
|---|---|---|---|---|---|
| | 구 분 | | 일정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 |
| '19년 하반기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 |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8. 7.(수) ~ 8. 9.(금), 24시간 / 3일간 [취소기간 : 8. 10.(토) ~ 8. 14.(수), 24시간 / 5일간] | | |
| | 제1차 시험 | 실기시험 | 8월 중 | 8. 28.(수) ~ 30.(금) | 9. 11.(수) |
| |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9. 11.(수) | 9. 25.(수) | 10. 7.(월) |
| | | 인·적성검사 | | 9. 26.(목) |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10. 7.(월) | 10. 16.(수) | 10. 30.(수) |

○ 서류전형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예정

※ 제출서류는 9. 25.(수) 18:00까지 제출(우편은 9. 24.(화) 소인까지 인정)

○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 게재

※ 세부 및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공고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4. 실기시험방법 및 평가내용

| 시험구분 | 평가방법 | 평가내용 |
|---|---|---|
| 조 종 사 | 시뮬레이터 평가 | 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

##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의 재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법률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나. 응시자격

| 분 야 |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
|---|---|
| 항공조종 |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단발 응시불가)<br>①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br>–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br>※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br>②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br>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br>④ 「항공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br>⑤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소지자 |

## 다. 응시연령

| 구 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위 | 조종사 | 23세 이상 45세 이하 | 1973. 1. 1. ~ 1996. 12. 31. |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 라. 신체조건

○ 항공안전법 제40조 “항공신체검사 증명”에 따름

## 마. 거주지 : 제한 없음

## Ⅱ. 원서접수

###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9. 8. 7.(수) ~ 8. 9.(금) / 3일간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취소기간 : 8. 10 ~ 8. 14 / 5일간)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www.119gosi.kr) 사이트 접속접수

다. 사진등록

○ 반명함 증명사진,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라.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소방위 7,000원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재(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 시 납부 응시료 환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마. 가점 ※ 자격증 가점은 없음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kr)사이트에 접속 응시원서접수 시 응시자 본인이 가점 표기

| 구 분 | 취업지원 대상자 | 의사상자 등 |
|---|---|---|
| 가산점 | 5%, 10% | 해당없음 |

○ 원서접수 이후 면접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지정을 받은 응시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면접시험 전일까지 채용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시험단계별로 모두 적용

## Ⅲ. 실기시험

### 1. 조종사 실기시험

가. 시험일시 : 2019. 8. 28.(수) ~ 8. 30.(금)

※ 당일 08:30까지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장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다. 평가항목 : 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라.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조종사자격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마. 합격자 결정

- 각 항목별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이상 득점자(각 평가항목별 4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19. 9. 11.(수)

나. 공고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 게재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gb119.go.kr) 채용정보 게재

다. 공고내용 : 실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인·적성검사 일정 등

## Ⅳ.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 1. 서류제출

가. 제출일자 : 2019. 9. 25.(수) 18:00까지 제출(인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은 9. 24.(화) 소인까지 인정

나. 제출장소 : 경북도청 소방행정과 인사채용팀(610호)

※ 주소 : 경북 안동시 도청대로 455, 소방행정과 인사채용팀(610호) ☏ 054-880-6152

다. 제출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라.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조종사 | ①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다음 사항*이 기재된 것 1부(군 경력자에 한함)<br>*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br>②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4 서식)<br>※ 발행기관이 붙임 4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당기관 서식 사용 가능<br>③ 비행경력증명서* 1부(최종비행일 명시) ※ 모의비행 시간 미포함<br>*「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br>④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사본 1부(원본 지참)<br>⑤ 계기비행자격증명서 사본 1부(원본 지참)<br>⑥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br>⑦ 4대보험(건강·연금) 완납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br>⑧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1부<br>⑨「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1부<br>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붙임 5 서식) |

마.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재직시 징계사항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②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건강·연금보험으로 선택, 경력기간이 속한 연도 전부 발급

③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 공개 처리, 과세기간은 경력기간이 속한 연도 전부 발급

④ (모든 증명서)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 2. 합격자 발표

가. 공고일시 : 2019. 10. 7.(월) 최종합격자 발표 시 결과 반영

나. 공고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 게재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gb119.go.kr) 채용정보 게재

## Ⅴ.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1. 인·적성검사

가. 검사일자 : 2019. 9. 26.(목)

나. 장　　소 : 별도 공고

다. 검사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라. 검사방법 : 응시자 집합 인·적성 검사(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등)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바. 응시자 유의사항

-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써 미 응시할 경우 불합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2. 면접시험

가. 시험일시 : 2019. 10. 16.(수)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다. 시험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라. 평가방법 : 1단계 집단면접(블라인드 면접), 2단계 개별면접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바. 합격자 공고 : 최종 합격자 공고와 병행 발표

**<면접시험 합격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0$,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Ⅵ. 최종합격자 발표

### 1. 최종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19. 10. 30.(월)

나. 공고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 게재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gb119.go.kr) 채용정보 게재

**<최종 합격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 Ⅷ. 응시자 유의사항

### 1.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북도 및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경상북도) http://www.gb.go.kr - 시험정보란
▸(경북소방본부) http://www.gb119.go.kr - 채용정보란

○ 시험일정 및 정보는 상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실기·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실기·면접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실시·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 등)제3항 제5호

○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자격·면허는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유효하여야 함.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신청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 지급방법, 사회보험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법인등기 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2.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자의 응시분야, 지역은 원서접수 종료 후 변경할 수 없으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분야, 응시자격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신체검사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4.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 5. 기타사항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실기, 면접 등)**
- 문의처 : 소방청 장비항공과
- 연락처 : 044-205-7703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주)에니아소프트
- 연락처 : 043-219-1332

**◆ 제출서류 문의 : 경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인사채용팀**
- 연락처 : 054-880-6152

붙임 1.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1부
2.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4. 경력증명서 서식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부

<붙임 1>

#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
| 1단계<br>(집단면접) |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 |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br>(개별면접) |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 |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0$,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붙임 2>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 1. 취업지원대상자

○ 기준일시 :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응시원서 제출이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면접시험 전일 18:00까지(도착)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팀 제출

○ 가점부여점수 : 만점의 5% 또는 10%

○ 적용대상 :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처, 민원24시)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붙임 3>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 | | | | | | |
|---|---|---|---|---|---|---|
| 기관 현황 | 회사명 | | | 대표자 성명 | | |
| | 소재지 | | | | | |
|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한글) | | | 생년월일 | | |
| 경력사항 | 근무기관 | 근무부서 | 직 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예시) | 근무 형태 |
| | | | | | 2010.12.25. ~ 2012.12.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근무기간 | | | | | |
| | 징계사항 | | | |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확 인 자 1 | | 확 인 자 2 |
|---|---|---|
| 성 명 | | |
| 연락처 | | |
| 서 명 | | |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054-880-6152, fax 054-880-6109)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상북도에서 응시자격 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table>
<tr><td>수집·이용 목적</td><td>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td></tr>
<tr><td>개인정보 처리 근거</td><td>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br>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td></tr>
<tr><td>수집·이용할 항목</td><td>-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br>-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td></tr>
<tr><td>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td><td>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제공받는기관</th><th>제공근거 및 목적</th><th>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th><th>보유 및 이용기간</th></tr>
<tr><td>근로복지공단<br>국민건강보험공단<br>국민연금관리공단</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br>-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td><td>- 성명, 주민번호</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국세청</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br>-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td><td>- 성명, 주민번호</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경력증명서 발급기관</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br>-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td><td>-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br>-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번호, 취득일자, 전공명</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자격증 발급 기관</td><td>- 임용령 제15조,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br>-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able></td></tr>
<tr><td>보유·이용기간</td><td>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br>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td></tr>
<tr><td>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td><td>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td></tr>
<tr><td>수집·이용 동의 여부</td><td>경상북도에서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br>▪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td></tr>
</table>

2019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